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보고서

2001. 7. 3.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81회 제1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2001. 7.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아래 공유재산은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동청사가 2001. 3. 4일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용도폐지후 현재 공가로 관리중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으로서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수리 등 관리비용의 과다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산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동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가. 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천원)	소유자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각방법
	지목	소재지	면적(㎡)					
	계			484.09	769,097			
1	대	신공덕동 26-4	231.00	741,510	마포구	2001. 8. 10	건물노후로 인한 고비용 절감 및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함	일반경쟁 입찰
2	건물	신공덕동 26-4 위지상 지1/지상2층	253.09	27,587				

※ 산출근거 : 토지 개별공시지가 1㎡당 3,210천원
건물 시가표준액 1㎡당 109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동 재산은 일반상업지역 및 재개발구역으로 신공덕동 26번지 4호상의 대지 231㎡ (약 70평), 연면적 253.09㎡(약 77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 의한 매각 추정가액은 7억 6,909만 7천원이 되겠음.

○ 2001. 3. 4일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동 재산은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수리 등 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이 예상되어 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매각방법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인데 금액은 감정평가액인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감정평가액이 예가로서 입찰시 예가 이상 최고액으로 낙찰됨.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매각에 대하여 동장 및 구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동장 및 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질의요지(박주서 위원) : 공개입찰시 유찰의 경우에는 예가가 낮아지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재무과장) : 1차에 10%씩 2차에 걸쳐 예가의 20%까지 낮아질 수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1. 6.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의회의의 결을 얻기 위함.

2. 주요골자

아래 공유재산은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동청사가 2001. 3. 4일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용도폐지후 현재 공가로 관리중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으로서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수리등 관리비용의 과다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산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동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정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가. 재산의표시

		계	484.09	769,097				
1	대	신공덕동 26-4	231.0	741,510	마포구	2001.8.10 매각예정	건물노후로 인한 고 비용 절감 및 구 재 정수입 확충을 위함	일반경정 입찰
2	건물	신공덕동 26-4 위지상 지1/지상2층	253.09	27,587				

※ 산출근거 : 토지 개별공시지가 1㎡당 3,210천원 및 건물 시가표준액 1㎡당 109천원

3. 근 거

- 지방재정법 제77조(2001. 1. 29)
-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2001. 1. 29)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000. 10. 20 대통령령제16983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000. 10. 20 대통령령제16983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2000.1.13 조례 제450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재산의 표시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면적 (㎡)	추정가액 (천원)	소유자	매 각 사 유	매각방법
	지목	소재지	면적(㎡)					
	계		484.09	484.09	769,097			
1	대	신공덕동 26-4	231.0	231.0	741,510	마포구	건물노후로 인한 고비용 절감 및 구 재정수입 확 충을 위함	일반경쟁 입찰
2	건물	신공덕동 26-4	253.09	253.09	27,587			

※ 산출근거 : 토지 개별공시지가 1㎡당 3,210천원 및 건물 시가표준액 1㎡당 109천원

【재 산 현 황】

□ 일반현황

-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및 “재개발구역”으로 도시계획상 저촉사항 없음.
- 토지이동내역
 - : 신공덕동 26-4 대 244㎡ 토지가 '70. 1. 29일 신공덕동 26-4 대 231.0㎡와 신공덕동 26-22 대 13.0㎡로 분할됨.
- 건물현황
 - : 건물은 '60. 12. 7일 준공되어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철근조/평육개 구조의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임.

□ 기타사항

- 1960. 12. 7 : 건물 준공
- 2001. 3. 4 : 신공덕동사무소 신청사로 이전(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내)
- 2001. 3. 27 : 용도폐지결정 (행정재산 → 잡종재산)
- 2001. 4. 9 : 재산처분 결정 (구청장방침 제620호)
- 2001. 6. 7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적정 결정

□ 공유재산 매각 이유

- 상기 공유재산은 신공덕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동청사가 용도폐지후 현재 공가로 관리중에 있는 구유잡종재산으로서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인하여 수리등 관리비용의 과다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산관리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가능한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함.

첨부 :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구유잡종재산 매각대상 현황도 및 위치도

